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4(수) 10:00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운영 위원회
전문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11호
- 나. 제출자 : 고성미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4. 15.
- 라. 회부일자 : 2024. 4. 15.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 지정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 나.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다. 출산휴가를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출산전후휴가로 변경(안 제25조제3항)
- 라.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42조제1항 및 제3항)
- 마. 구정질문 시 구청장 통지 절차 정비(안 제52조제2항)
- 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임위원회 원칙으로 변경(안 제55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u><신 설></u>	제15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u>②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u> <u>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u> <u>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u> <u>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u> <u>대행한다.</u> 이 경우 직무를 대행 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 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u>② ~ ④</u> (생 략) <u><신 설></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u>제2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u> <u>언)</u>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생 략) <u>제4장 의원</u> <u><신 설></u>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u><삭 제></u> <u>제4장 의원</u>
제21조 ~ 제23조 (생 략) <u>제21조 ~ 제23조 (생 략)</u>	제22조 ~ 제24조 (현행 제21조부 터 제23조까지와 같음) <u>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u> · ② (생 략)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
	제25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제25조 ~ 제28조 (생 략)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신 설>

제29조 ~ 제40조 (생 략)

제41조(위원회의 선임) ①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42조 ~ 제48조 (생 략)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 출산전후휴가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 ~ 제29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30조 ~ 제41조 (현행 제29조부터 제40조까지와 같음)

제42조(위원회의 선임) ① -----
----- 본회의 의결
로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회의 선임 후 상임위원회의 개선 또는 보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3조 ~ 제49조 (현행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와 같음)

<삭 제>

<p>② (생략)</p> <p><u>제55조</u> (생략)</p> <p><u>제7장 질서와 경호</u></p> <p><u><신설></u></p> <p><u>제56조 ~ 제60조</u> (생략)</p> <p><u>제8장 의원연구활동 등</u></p> <p><u><신설></u></p> <p><u>제61조 ~ 제65조</u>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56조</u> (현행 제55조와 같음)</p> <p><u><삭제></u></p> <p><u>제7장 질서와 경호</u></p> <p><u>제57조 ~ 제61조</u> (현행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와 같음)</p> <p><u><삭제></u></p> <p><u>제8장 의원연구활동 등</u></p> <p><u>제62조 ~ 제66조</u> (현행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와 같음)</p>
---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한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 지정 규정을 신설함(「지방자치법」 제63조).
- 안 제20조에서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안 제25조제3항에서는 출산휴가를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출산 전후휴가로 변경함.
- 안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의결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선 및 보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신설함.
- 안 제52조에서는 구정질문 관련 예측 및 업무 효율성 확대를 위하여 질문자수와 질문순서 통지 절차를 정비함.
- 안 제55조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보고로 변경함.

- 본 안건은 의회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 도모 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과과 같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현행 조례 1부.

【붙임 1】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시행 2024. 01. 1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31호, 2024. 01. 1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제1차 ·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정례회의 안건) 정례회에서 심의 · 의결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 · 의결한다.
2.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 · 의결한다.

제10조(임시회의 안건) ① 의장은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한다.

제11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12조(의안의 제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3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 이 되는 해의 6월 30일 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 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16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때에는 부의장이 그 접수·상정 및 본회의 개의와 회의 진행 등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7조(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8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0조(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의원

제21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3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시에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등)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 의원에게 송달 및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의안의 심사 처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청원의 심사 처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제31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6명 이내
2. 행정재경위원회 : 5명 이내
3. 복지건설위원회 : 5명 이내

제32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이의신청과 제12조의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항

2. 행정재경위원회

- 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라.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마.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 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 사. 구청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 가. 복지가족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푸른미래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라. 문화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3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4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은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변경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의원임기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5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정수는 5명 이상 9

명 이하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예비비·지출·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의 본문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4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 ②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③ 위원장이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두며, 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45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 제46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 제47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48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정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제49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담당관·과장급
 3. 구청장의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4.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법인의 임원
-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인 사람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 ·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구정질문의 요지가 기재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회의 개의시간 24시간 전까지(휴무 · 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청장에게 질문의 요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3조(서류제출 요구)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예산전용 내역은 분기별로,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 상황은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56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를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의장석 점거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8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회의장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9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0조(녹음 ·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 녹화 ·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녹음 · 녹화 · 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장 의원연구활동 등

제61조(입법 · 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 · 법률고문을 위촉 · 운영한다.

② 입법 · 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 · 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의원연구단체) ① 의회는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 등이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전원회의) ① 의장은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개최 이유 및 논의 요지가 기재된 요구서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전원회의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및 논의 내용 등을 전원회의 개최 3일전 까지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원회의의 주관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참석의원 중 다선의원, 참석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전원회의의 결과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